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39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김선교 · 김성원 · 김상훈
최보운 · 이현승 · 박덕흠
구자근 · 김위상 · 윤상현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그 해석상 해당 자료를 보증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증가입 및 해지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법률 제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6항 전단 중 “제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 ----- ----- ----- ----- ----- ----- <u>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u> <u>전자적 방법으로 제출</u> ----- -----. ----- ----- ----- -----.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